

의안번호	2203548
의 퇴 인	김형동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4.
추계번호	24B3496
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[폐기물관리법]			
1	안 제25조의2 (전용용기 제조업)	전용용기 제조를 업(이하 “전용용기 제조업”이라 한다)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,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(제1항) ※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 업무를 환경부에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관	의무규정
2	안 제33조 (권리·의무의 승계 등)	폐기물처리업자,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,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폐기물처리업자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폐기물처리업, 폐기물처리시설,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(이하 이 조에서 “폐기물처리업등”이라 한다)을 양수하거나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가(換價)나 「국세징수법」·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나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의 허가를 받아야 함.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·승인·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·의무를 승계함(제1항) ※ 폐기물처리업 등의 양수·인수 등 허가권자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추가	의무규정
3	안 제37조(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)	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나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(제2항) ※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·폐업 등 신고 수리권자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추가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45조(폐기물 인계·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)	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이나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(제5항) ※ 폐기물 인계·인수 내용 등의 전산기록 관련 자료 제공 요구권자에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을 추가	의무규정
[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]			
5	안 제11조의3 (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)	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.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2항) 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: 환경부장관 2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※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권자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추가	의무규정
6	안 제19조 (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)	환경부장관,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</u>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·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 ※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권자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를 추가	재량규정
[물환경보전법]			
7	안 제60조 (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)	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시·도지사·특례시장</u>에게 신고하여야 함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※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수리 업무를 환경부에서 시·도지사·특례시장에게 이관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8	안 제61조 (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)	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골프장에서의 맹·고독성 농약의 사용 및 잔류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,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(제2항) ※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업무를 환경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이관	의무규정
[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]			
9	안 제6조(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)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의 장은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※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권자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	의무규정
10	안 제26조 (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의 지정취소)	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(제1항) ※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,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추가	의무규정
[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]			
11	안 제15조 (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)	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(이하 “환경전문공사업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.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※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권자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[지하수법]			
12	안 제6조의2 (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(水位低下),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<u>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</u> ※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승인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이관	재량규정
[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]			
13	안 제6조의3 (특정도서 명예감시원)	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·단체의 구성원,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(제1항) ※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권자에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추가	재량규정
[자연환경보전법]			
14	안 제60조 (자연환경학습원)	시·도지사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이하 이 조에서 “대도시”라 한다)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·도지사와 <u>대도시의 장</u> 소속으로 자연환경교육·연수·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음(제1항) ※ 자연환경학습원 설치권자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[폐기물관리법]		
1	안 제25조의2 (전용용기 제조업)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,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처분 등의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 인력 및 예산의 이전이나 사업범위 확대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미발생 예상
2	안 제33조 (권리·의무의 승계 등)	
3	안 제37조 (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)	
4	안 제45조 (폐기물 인계·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)	
[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]		
5	안 제11조의3 (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)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미 설치계획 승인 권한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되어 있어, 개정안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력 및 예산의 이전이 불필요하고, 사업 범위도 확대되지 않음
6	안 제19조 (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)	
[물환경보전법]		
7	안 제60조 (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)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, 기타수질오염원 등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, 현재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인한 인력, 예산, 사업범위 등 변경이 없음
8	안 제61조 (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)	
[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]		
9	안 제6조(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0	안 제26조 (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)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,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권한과 절차를 법령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이 없을 예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[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]		
11	안 제15조 (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[지하수법]		
12	안 제6조의2 (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	미대상: 환경부에 따르면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심사·승인은 별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수행된 업무여서 승인권이 환경부장관에게 이양되는 경우에도 관련 인력 및 예산의 이전이나 사업범위 확대는 없을 예정
[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]		
13	안 제6조의3 (특정도서 명예감시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[자연환경보전법]		
14	안 제60조 (자연환경학습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권자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
(안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)
 -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권자에 17개 시·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, 환경부에 따르면 계획 작성(2024년 기준 19개 대도시) 및 검토(환경부)를 위해 현재보다 추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-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·관리권자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(안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)
 - 개정안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·관리권자에 기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하는 것으로,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·관리권자의 확대를 위해 이전이 필요한 관련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고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-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권자에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추가(안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의3)
 - 개정안은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사무를 기존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, 환경부에 따르면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사무는 임의조항으로서 법시행 전 지자체별 추진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- 자연환경학습원 설치권자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추가(안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60조)
 - 개정안은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권한을 시·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,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연환경학습원을 추가로 설치할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－ 자연환경학습원은 1980년대 설치(6개소) 이후 추가 설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